

새마을소득특별회계융자금상환연기승인(안)

의안
번호

242

제출일자 : 1996.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조례 제 16조에 의거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 연기(안)를 붙임과 같이 심의 의결 요구함.

2. 주요골자

적성면 가월리 권영식의 4인은 '92년도에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융자금 6천만원을 융자받아 화해 관입(납산금,소판금)을 제매하던 중 '96년 7월 집중호우로 침수 되어 약 8천만원의 손해를 입어 융자금상환이 어려운 실정으로 납기일 '96. 12. 31 - 2000, 12. 31까지 인 것을 각 1년씩 상환 기일을 연기 하고자 함.

새마을소득특별회계융자금상환연기

☐ 융자금 연기 내역

융자 년도	채무자		융 자 금 액	상환액	미상 환액	상환기간 및 금액		
	주소	성명				연장기간		금액 (천원)
						당 초	연 기	
'92	적성면 가월리 389-2	권영식 외 4인	60,000	-	60,000	1996.12.31	1997.12.31	12,000
						1997.12.31	1998.12.31	12,000
						1998.12.31	1999.12.31	12,000
						1999.12.31	2000.12.31	12,000
						2000.12.31	2001.12.30	12,000

○ 피 해 액 : 7천9백5십만원

[납산금 : 1본 30,000원 × 2,400본 = 72,000천원
 소판금 : 1본 15,000원 × 500본 = 7,500천원

☐ 기타 참고 사항

- 새마을소득사업 상환 연기 신청서 사본,
- 새마을소득사업융자사업 피해 현장 사진 사본,
- 파주시 의견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서

등자 년도	사 업 명	채 무 자		융자금액	상환액	미상환액	연기기간 및 금액		
		주 소	성 명				연기가산		금 액
							당초	연기	
92.	작업반차량	작업반	권영익	6,000,000원	1,800,000원	6,000,000원	98년12월		
	화재보험금	가정/38/3							

※ 상환년도별로 구분작성

1. 피해(채해)내용

1. 화재보험금(공류는 납산금, 소관금)

납산금 1분 30000원 × 2400분 = 7200000원
 소관금 1분 15000원 × 500분 = 750000원
 합계 795000원

2. 상환연기신청 사유(구체적으로 작성)

1. 본인을 비롯하여 1000명 정도의 비토와 권수로 수확을 하느 못함
2. 화제는 재정권이 없이 2년간 여유를 구함으로
3. 재산을 하려면 2년간 능숙으로 같이 습니다

덧붙임 :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사진, 문서) 첨부

성 명	날인
이 대	
박 근 주	
장 기 호	
권 준	
권 영 익	

199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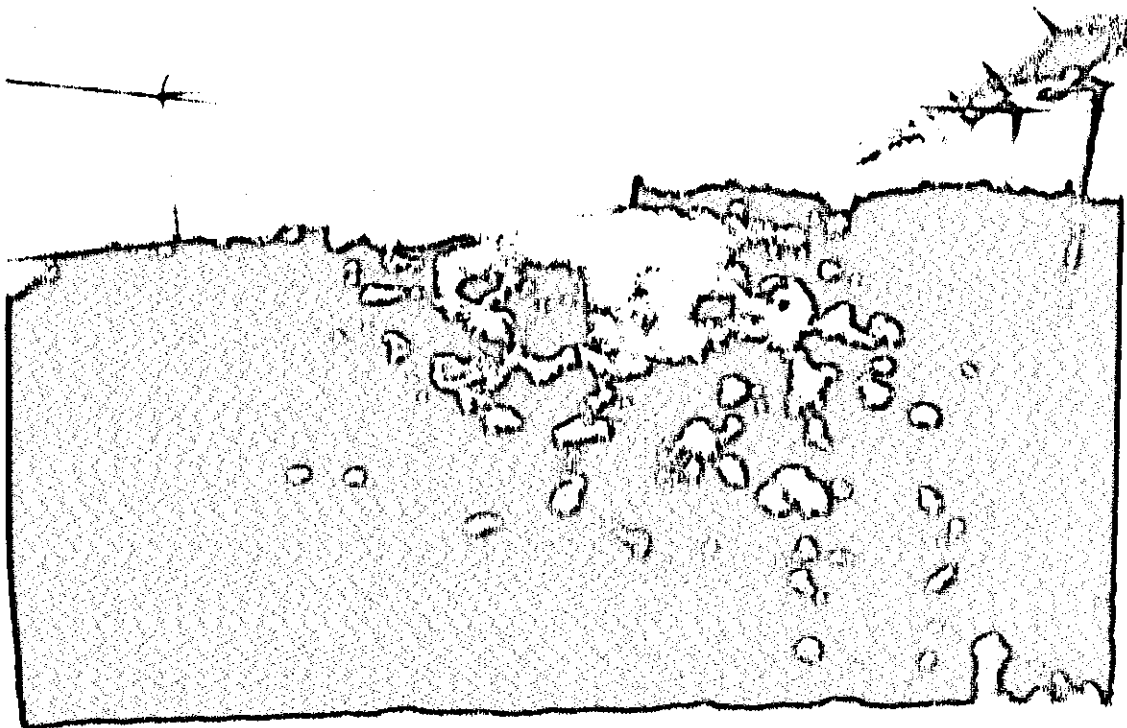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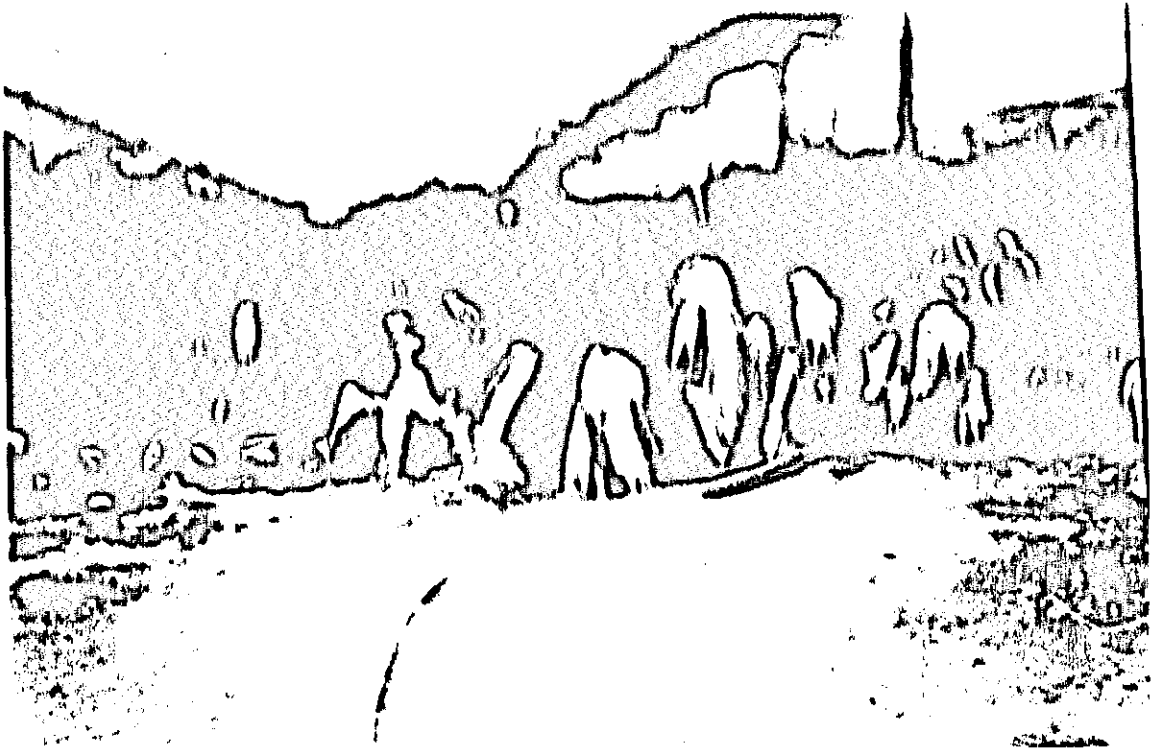
신청자 권영익

주 소 작곡권 작업반 가정/38/3

전화번호 919-4445

새마을소득사업지원 재해 전경

[화해관임종묘(남상금)]



파 주 시 의 건

직성면 가원리 권영식(마을대표)는 '96. 7월말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으로 지원된
화훼관엽(남상금,소판금)사업장인 비닐하우스가 침수되어
그동안 투자하여 제배한 보람도 없이 남상금 소판금이 고사 사업 실패로
현재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앞으로 소득을 올려 상환할 수
있도록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조례 제16조에 의하여 상환을 연기
하여줌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500만원 범위내로 한다.

②융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제 13 조 (대부기간)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지치 2년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에 따라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4 조 (융자금 대부신청) 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하는 마을은 인장과 새마을 지도자 공동명의(가구의 경우 개인명의)의 별지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사업참가자 전원이 상호연대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가구단위로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마을주민 2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③본 융자금의 경우에도 제7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 15 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년1회로 하되, 그 기한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환기한만료일이 속하는 만기의 말일(6. 30, 12, 31)로 한다.

제 16 조 (융자금의 상환기간연장) ①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시장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시지회와 협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 17 조 (가산금 및 독촉) ①상환금을 상환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시장은 상환기한 경과 1월, 2월 및 3월후 각각 10일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전에 징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18 조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융자특례) ①지방이주 도시영세민으로서 정착의지와 자립의욕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특별지원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